

제36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업 무 보 고

2018. 7. 25.



행정안전부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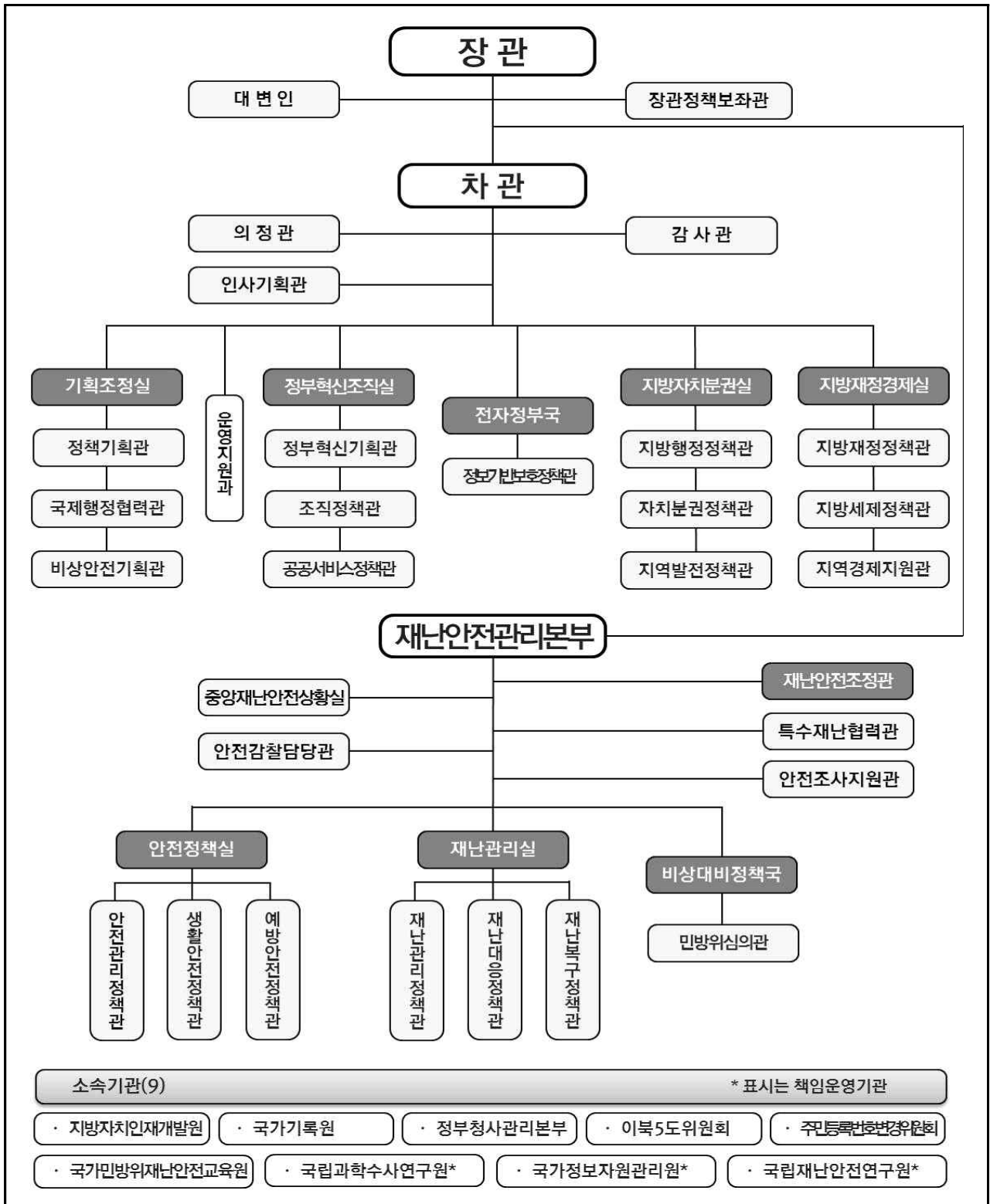
I . 일반 현황	1
II . 중점 추진과제	9
1. 획기적 자치분권 및 따뜻한 공동체 구현	11
2. 강력한 재정분권 및 지역 일자리 창출	15
3.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혁신	19
4.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정부로 도약	25
5.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29
6.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	33
III . 당면 현안	37
IV . 2018년 하반기 정부입법 계획	43

I .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원

* '18. 7. 1. 기준

- 기구 : 1차관, 1본부, 7실·조정관, 28국·관, 1상황실, 104과 / 9개 소속기관
- 정원 : 총 3,577명(본부 1,488, 소속기관 2,076, 경찰위원회 3, 전직대통령비서관 10)



2. 주요 기능 및 예산

□ 주요 기능 및 역할

① 지방자치제도 운영 및 지역발전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 정책의 총괄·조정, 지방자치제도 운영(사무이양, 지자체 조직, 지방의회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 지원, 접경관·도서 등 지역발전 사업 추진
② 지방재정·세제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주재원 확충 및 교부세 운영 등 지방재정 제도 운영 지방세 제도 운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총괄·조정
③ 정부혁신 총괄 및 정부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참여 확대, 행정·민원제도 개선, 공공서비스 혁신 정부조직·정원 관리 및 의정·상훈·기록·청사관리 등 정부운영 지원
④ 전자정부 추진 및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조정, 전자정부 사업 성과관리 및 국제협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조정,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⑤ 안전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및 비상대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계획 수립·운영, 생활안전 취약요인 점검·개선 예방안전 교육·훈련 등 총괄, 비상대비 및 민방위 훈련
⑥ 재난대응·복구 및 예방정책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재난대비·대응체계 기획·조정, 중앙·지자체·민간 등 협업체계 구축·운영 중대본 운영, 재난지역선포 등 재난복구계획 수립·조정, 지진방재정책 수립

□ 2018년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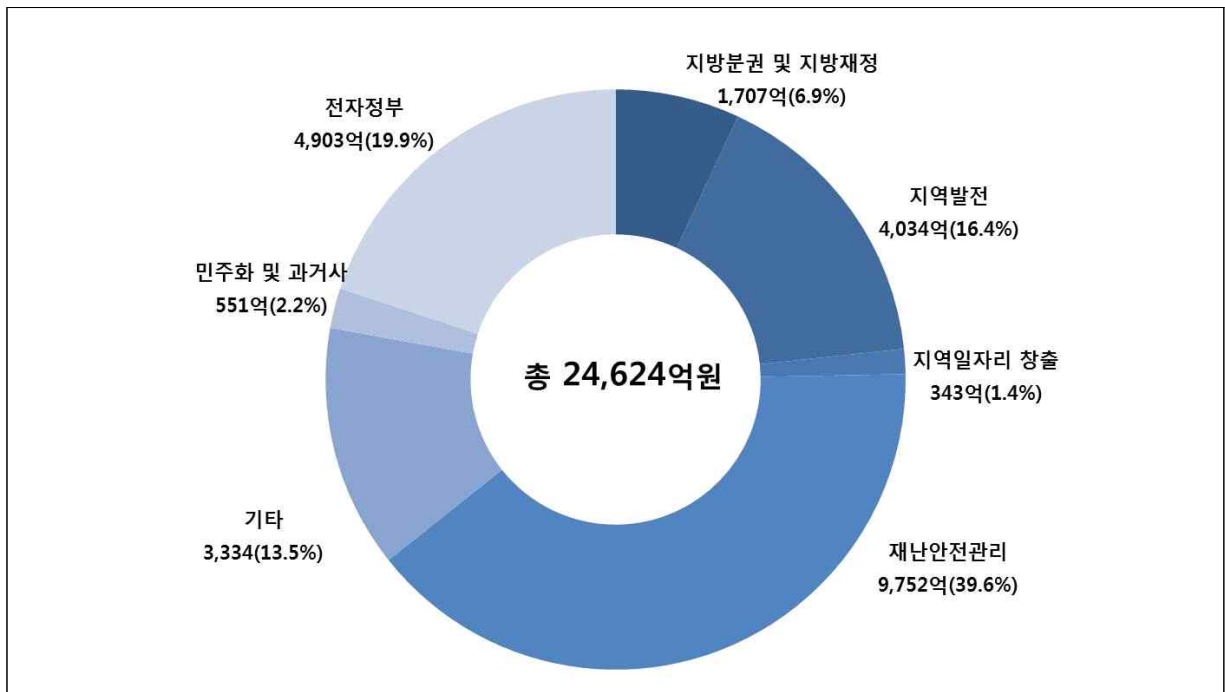
○ 총액 : 48조 7,579억원 (추경 1,012억원 포함)

(단위 : 억원)

	예산액	비고
총 계	487,579	
일반회계	482,119	○ 본부집행 : 14,540(3.0%)
○ 기본적 경비	3,150	○ 지방지원 : 473,039(97.0%)
- 인건비	2,776	- 지방교부세* : 459,805
- 기본경비	374	• 보 통 424,696
○ 지방교부세	459,805	• 특 별 13,135
○ 사업비	19,164	• 소 방 4,173
		• 부동산 17,801
특별회계	5,460	- 국고보조금 : 13,234
○ 지역발전특별회계	5,460	* 내국세의 19.24% + 종합부동산세

* '18년 정부예산 432.7조원(추가경정예산 포함)의 11.3%

○ 사업비 : 24,624억원 (일반회계 19,164억 + 특별회계 5,460억)



3. 소관 법률 현황 (177개)

* '18. 7. 1. 기준

부서명	법률명
기획조정실 (2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정부혁신 조직실 (10개)	정부조직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
전자정부국 (2개)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 분권실 (119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주민등록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도서개발 촉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법 등
지방재정 경제실 (17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새마을금고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안전정책실 (12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국민안전 교육 진흥기본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재난관리실 (4개)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풍수해보험법
비상대비정책국 (2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민방위 기본법
직속관 (6개)	상훈법, 국가장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기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소속기관 (3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체 법률 1,427개 중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은 12.4%

4. 지방자치단체 현황

* '18. 7. 1. 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 : 총 243개

- 광역자치단체(17) : 특별시 1, 광역시 6, 특별자치시 1, 도 8, 특별자치도 1
- 기초자치단체(226) : 시 75, 군 82, 자치구 69
 - ※ 행정시 2, 일반구 32, 읍면동 3,500개(읍 224 / 면 1,189 / 동 2,087)

□ 지방의원 정수 : 총 3,756명

- 시·도 의원 : 829명(비례 87명, 교육의원 5명 포함)
- 시·군·구 의원 : 2,927명(비례 386명 포함)

□ 지방공무원 정원 : 총 316,853명(시·도교육청 제외)

- 시·도 : 98,117명
- 시·군·구 : 218,736명

□ 2018년도 예산규모 : 총 210.7조원(당초, 순계기준)

- 시·도 68.7조원(32.6%), 시·군·구 142.0조원(67.4%)
- 일반회계 166.5조원(79.0%), 특별회계 44.2조원(21.0%) ※ 기금 23.5조원

□ 2018년도 주요 재정지표

- 재정자립도* : 평균 53.4% ('17년 53.7%, '16년 52.5%, '15년 50.6%)
 - * (지방세+세외수입 / 지자체 예산) × 100
- 재정자주도* : 평균 75.3% ('17년 74.9%, '16년 74.2%, '15년 73.4%)
 -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지자체 예산) × 100

5. 산하기관 현황 (10개)

* '18. 7. 1.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구분

구분	기관명	기관장	성격	설립근거	정원	예산 (억원)
준정부기관 (2)	한국정보화 진흥원	문용식 (‘18.4.10.~’21.4.9.)	업무 위탁	국가정보화 기본법	348	4,359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김영기 (‘18.3.12.~’21.3.11.)	업무 위탁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194	1,166
기타공공 기관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지선스님 (‘17.6.5.~’20.6.4.)	업무 위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42	114
	일제강제 동원피해자 지원재단	김용봉 (‘16.6.2.~’18.6.1.)	업무 위탁	민법	32	37
일 반 기 관 (6)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윤태범 (‘18.2.6.~’21.2.5.)	국가, 자체 출연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육성법, 민법	97	170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유상수 (‘15.7.27.~’18.7.26.)	상호 부조	대한지방 행정공제회법	127	153,900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김동현 (‘18.4.9.~’21.4.8.)	상호 부조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법	128	4,645
	한국지역 진흥재단	김기수 (‘17.3.31.~’20.3.30.)	자체 출연	민법	39	30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지대범 (‘18.7.2.~’21.7.1.)	업무 위탁	전자정부법	226	1,465
	지방공기업 평가원	박동훈 (‘17.1.20.~’20.1.19.)	업무 위탁	지방공기업법	49	140

Ⅱ . 중점 추진과제

〈1〉 획기적 자치분권 및 따뜻한 공동체 구현

- ① 주민이 체감하는 획기적 자치분권
- ② 공동체에 기반한 포용사회 구현
- ③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1

주민이 체감하는 획기적 자치분권 추진

< 주요 성과 >

- √ 「자치분권 로드맵(안)」 발표('17.10월),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18.2월)
- √ '주민조례 제·개폐 온라인시스템' 개통('18.1월), '단체장 비전포럼' 개최('18.6월)

□ 자치와 분권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 권한과 사무의 적극적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 강화
 -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이양사무*에 대한 행정지원 확대
 - * 자치분권위 심사, 부처 협의 등을 거쳐 77개 법률, 518개 사무 이양 확정
- 자치사무 확대와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 모든 제·개정 법령의 사무배분 적정성 및 자치권 침해여부 사전검토 제도화*
 - * 입법예고 완료('18.5.23.~7.2.), 법제심사 등 거쳐 국회 제출(9월)

□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자치역량 제고

- 행정수요 신속대응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
 - 지자체별 기구설치의 자율성 확대 및 탄력적 공무원 정원 운영
 - ※ 지자체 조직·인사 운영현황 공개 확대 등 공정성·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병행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의정역량 강화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
 - ※ '지방의회아카데미' 개최 등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소환과 조례 제·개폐청구 요건 완화 등 직접참여 확대
 - '주민자치회'·'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및 재정정보 대국민 공개 강화

□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자체 위상 강화

- '시·도지사간담회' 정례화* 및 입법화 추진
 - *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간사) 등 관계부처 장관 등
- 국정현안 공유 및 중앙·지방 소통* 강화
 - * 광역·기초단체장 간담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부단체장 국정운영 워크숍

2

공동체에 기반한 포용사회 구현

< 주요 성과 >

- √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506명 번호 변경(17.6월~),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 수립(17.12월)
- √ 남영동 대공분실 환원방안 발표(18.6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위원회」 출범(18.7월)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지원
 - * ‘공동체 활성화계획·마을발전계획 수립,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등 규정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중)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쏘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설치(7월 현재 93%→ 연내 100%)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
- 주민과 함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 * (‘18년) 춘천·전주 등 2개소 개소 → (~’20년) 전국 6개소로 확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

-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못 다한 과거사 진실규명 추진
 - 진실화해위원회 재개를 통한 추가조사 및 전향적 배·보상* 추진
 - * 배·보상강구 조항 신설(「과거사정리법」) → 사회적 공론화 → 「배·보상특별법」 마련·시행
 - ※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중
- 舊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인권의 역사적 공간으로 조성
 - * 행정안전부를 관리주체로 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관리위탁

□ 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 지원

- 성숙한 시민사회의 참여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자원봉사·기부* 활성화
 - * ‘1365자원봉사포털’을 활용한 데이터기반 수요-공급 매칭, 기부제도를 허용 위주로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
 - ※ 그간의 사업성과 분석 및 공익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7월~)

3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 주요 성과 >

- √ 「지방분권·균형발전 비전회의」(18.1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18.4월)
- √ 「마을기업 박람회」(17.10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17.10월~) 및 근절대책 추진(18.6월~)

□ 주민중심·지역맞춤형 특화발전 추진

- 지방소멸 현상에 대비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추진
 - 민·관 협업을 통해 거점마을 중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 제고
 - * KT·LH 등과 파트너십 구축, '18년 11개 시·군 지원사업 추진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상생 도모
 -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행안위 법안소위 계류중), 「기부금품법」 등 관계법령 개정 추진

□ 접경지역, 도서 등 낙후지역 발전 지원

- 생태·안보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접경지역 지원
 - * 접경지역의 DMZ 등 생태·안보관광자원 활용,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로 육성
- 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섬 발전 대책」 추진
 - '섬의 날(8.8)' 제정 계기,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섬 관광 활성화 등
-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및 주변지역 지원

□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 불법촬영 범죄 근절*, 휴지통 없애기 등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 * 지자체 합동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 편성, 상시점검 및 위법성 홍보(연중), 백화점·마트·호텔 등 민간건물 화장실까지 점검 확대 추진
-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
 - 사고위험 자전거 도로 개선 및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
 -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대국민 안내·교육 강화
 - * 「도로교통법」 개정(18.3.27.)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시행(18.9.28.)

〈2〉 강력한 재정분권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상생발전 기반 마련
- ② 지방세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성 제고
- ③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1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상생발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

- √ 「지방재정운용 자율성 강화방안」 발표(17.6월), '범부처 재정분권 TF' 추진(17.11월~)
-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18.3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확대(100→245명)

□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 국세 - 지방세 비중 개선 등 재정분권* 추진

- 신장성·안정성이 큰 지방소비세 등을 중심으로 자주재원 확충
- *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및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12월)

○ 지자체 세입확충 등 자구노력 강화

-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세원 발굴
-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으로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 세입확대(탄력세율 적용 등) 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자구노력 유도

□ 지역 간 재정균형장치 강화

○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역 간 재정균형장치 마련

- 확충된 재원의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 활용,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추진

- *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TF」 구성·운영 등

□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지자체 재정운영 관리체계 개선

- * 「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도 예산낭비감시단' 구성·운영 등

○ 찾아가는 '지방재정 현장지원단' 구성 및 컨설팅* 추진

- * 재정분석 결과 재정 위험 가능성이 있는 단체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 제시

2

지방세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주요 성과 >

- √ '지방세 고지서 금융업 송달 서비스' 시범시행(17.8월), 납세자보호관 지자체 배치 의무화(18.1월~)
-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강화(17.11월),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18.5월)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강화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활성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쏠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 독립성 보장 및 실질적 권한 확대*
 - * (현행) 고충민원처리·상담 + (추가)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권 및 처분중지권 등
-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 차세대 시스템 개발 등 지방세 정보화 인프라 개선
 - 모바일 중심의 고지·납부 서비스, 지방세 간편결제수단 확대 등

□ 지방세 부과·징수 등 과세형평성 제고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로 과세형평성 구현
 - 고액·상습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도 명단공개 실시(11월~)
 - * 지자체 특별징수팀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실시(年 2회)
- 지방세 감면('18년 일몰도래 2.5조원) 합리적 조정
 - 객관적·전문적인 사전·사후평가 등을 통해 장기·관행적 감면은 정비하되,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 등에 대한 감면은 확대

□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개선 및 제도개선

- 비효율적으로 분산·관리되던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개편
 - ※ (현행) 지자체·공사·공단 등 개별시스템 → (개선) '세외수입시스템'으로 통합
-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 * 행정안전부 주관 범부처 협의체(관계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

3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성과 >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국비 831억원 총 10,552명 대상) 중점 추진('18.6월~)
- √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17.12월),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18.3월 개최)

□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중심의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고용 창출 및 교육주거복지 지원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지역 우수 일자리사업 지속 발굴 및 모델화, 공유·확산 지원
- 지방재정·세제 개선*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 * 지방계약 시 청년고용 우수업체 우대, 공유재산의 창업공간 지원 확대 등

□ 영세·소상공인 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전통시장(야시장)·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등 영세·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지원
 - * 전국에 야시장(20개소)·골목경제 활성화사업(15개소) 조성 추진
- '고향사랑상품권' 등 지역순환형 금융체계* 활성화
 - * 관련 법령 제정 추진,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플랫폼 개발·보급 등

□ 지역현장형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 규제현안* 발굴·해소 및 우수사례 확산
 - * 무인미니버스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140여건의 지방 규제현안 발굴·해소 추진
- 지방규제 중점 혁신분야 확대*, 규제애로 상시접수·신속처리 추진
 - * (현행) 신성장,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 (추가) 관광, 섬·접경지역 규제개선
- 채용비리 근절, 지방공공기관의 지역투자 확대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 ※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분야 경영평가 강화

〈3〉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혁신

- ① 국민 참여·소통으로 더 나은 정부 실현
- ② 사회적 가치 구현의 국민행복 행정서비스 확대
- ③ 민생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 구현
- ④ 정부운영 지원기능의 투명화·선진화

1

국민 참여 · 소통으로 더 나은 정부 실현

< 주요 성과 >

- √ 「정부혁신 해커톤」 개최('18.2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18.3월)
- √ '열린소통포럼' 개설('18.5월), 「정부혁신 책임관회의」 개최('18.7월)

□ 국민 공감형 정부혁신 및 범정부 협력체계 강화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른 국민체감형 혁신 가속화

* (3대 전략) ① 사회적 가치 구현, ② 참여·협력, ③ 신뢰받는 정부

(핵심과제) 사회적가치 중심 재정혁신,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 공공 정보·자원 공유,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채용비리·금품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 범정부 협업 및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체계* 구축

- 우수기관 현장방문 및 토론회를 통한 정부혁신 공감 확산(9월~)

* '정부혁신추진협의회(전략·과제 조정)' 및 '정부혁신국민포럼(국민의견 수렴)' 구성·운영

□ 소통 · 협력을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 정책참여 공간을 상설화한 「열린소통포럼」 운영

※ '18.7월까지 포럼 토론을 통해 31개의 정책의제 발굴, 소관부처 정책에 반영 중

- 주민이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하는 「국민해결 프로젝트」 추진

- 정부·공공기관·전문가·주민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문제해결 도모

- 실패에 대한 인식전환 및 재도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패박람회」 개최(9월)

□ 정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위원회 위상기능 및 비공개기준 강화 등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행안위 계류중)

-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및 정책실명 통합공개 확대

* 국민이 신청하는 정책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내역 및 기안자 실명 등 공개

2

사회적 가치 구현의 국민행복 행정서비스 확대

< 주요 성과 >

- √ 「정부24」 서비스 개시('17.7월~, 회원 수 760만명, 일평균 23만명 방문)
- √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17.8월),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18.5월)

□ 생활 속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 발굴·확대

- 공공부문 보유자원의 유휴시간 대국민 개방·공유(8월~)
 - ※ 회의실·강당·주차장·체육시설 등 442개 기관의 15,285개 자원 우선 개방
- 출산·보육 온라인 신고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확산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7월 현재 18개 → '18년말 300개, 대법원·복지부 협업), '행복출산(원스톱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결과 온라인 조회 실시(12월)
 - 온라인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확대
 - ※ ('17) 성동구·속초시 시설공단 등 7개 기관 → ('18) 37개 기관으로 확대

□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공감 행정 구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환경 개선
 - 고령자·장애인 등의 공공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추진
 - ※ 점자 안내판, 유모차·휠체어 경사로 등 민원실 개선, 시각장애 공무원 업무교재 보급
- 취약계층 대상 토론회 등을 통한 현장중심의 행정·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제 도입, 민원서류 음성안내 확대, 도서지역 폐교 재활용 등

□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정부24」 서비스 확대

- 건강검진일, 과태료,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등 '나의 생활정보' 실시간 제공
- 온라인 민원 발급(1,443종) 및 정책정보 통합제공(57만건) 등
 - ※ 2019년까지 282종의 정부서비스 및 97개 사이트의 정책정보 추가연계

3

민생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 구현

< 주요 성과 >

- √ 현장공무원 2.3만명 충원('18.상반기, 국가직 1.1만명 및 지방직 1.2만명)
- √ 정부인력 효율화재배치('17년 44개 기관 5,807명), 「다문화이주민*센터」 개설('17.9월)

□ 민생현장 공무원 인력보강 및 처우개선

- 국민생활 점점 공무원 충원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 치안·고용센터, 특수학교 등 안전·복지와 관련된 현장에 집중 배치
-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 복합치유센터 등 소방관 처우 개선, 소방인력 지역별 격차 해소 병행
- 행정안전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근무여건 개선
 - ※ 전환대상 근로자 3,073명 중 현재까지 1,694명(55%) 전환, '21년까지 완료 예정

□ 정부조직 인력 운영 효율화

- 기능감소·쇠퇴분야 인력의 전면 효율화·재배치('18년 2,454명)
- 공무원 충원효과의 국민 체감을 위한 인력운영 성과관리 강화
 - 현장서비스 개선정도를 '인력충원 성과분석지표*'로 개발·활용
 - * (경찰) 범죄검거율 제고, (소방) 현장 도착시간 단축, (근로감독) 임금체불 처리기간 단축

□ 협업행정 강화 및 정부조직 운영 과정의 국민참여 확대

- 국정·사회현안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부·민간 간 협업모델 구축
 - 「다문화이주민*센터*」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연계조직 확산
 - * ('17) 파주 등 10개소 최초 도입 → ('18) 김포·천안·여수 등 10개소 추가 개소
 -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협업정원제' 도입
- 국민 시각의 정부조직 운영을 위한 '국민참여단*' 구성 및 현장진단 실시
 - * 생활현장 조직(경찰지구대 등)을 방문하여 진단·집중토론 및 개선안 제시

4

정부운영 지원기능의 투명화 · 선진화

< 주요 성과 >

- √ '국민추천포상' 수여('18.1월), 3·1절 등 각종 정부 행사 개최(상시)
- √ 밀양 화재현장 등 25만 건의 과학수사 감정('18.상반기)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로 국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추진
 -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도입, 대통령기록 지정보호제도 보완·개선 등
- 소장 기록물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활용 편의성 강화
 -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및 '온라인 원문서비스' 확대, '저작권 프리존' 운영

□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행사 및 정부포상 운영

- 시대변화에 걸맞는 품격 있는 국경일 행사 개최
 - ※ 다문화가정·우수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 수요자 중심의 행사진행
- 합리적이고 영예로운 정부포상 제도 운영
 - 국민이 직접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는 「국민추천포상」 확산, 서훈취소 기준 강화(「상훈법」 개정안 행안위 계류 중)

□ 현장 · 디지털 중심의 감정체계 구축

- 중요사건 긴급출동체계 확립 및 24시간 긴급감정, 감정오류 제로화*
 - * 법의관 현장검안 직접 참여, 중요사건 교차검증 등 표준업무처리절차 정립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감정기반 구축
 - * 현장감정이 가능한 「실시간 스마트폰 위폐감식시스템」 전면 도입

□ 정부청사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지원 및 신청사 건립 추진
- 출입 신원확인 보안 강화, 사무공간 미세먼지 저감 추진

〈4〉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정부로 도약

- ①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구현
- ②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 구현
- ③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강화

1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구현

< 주요 성과 >

- √ 공공데이터 활용건수(누적) : ⁽¹³⁾1만4천건 → ^(18.6월)547만건
- √ '17 「OECD 공공데이터개방 평가」 1위, '18 「UN 전자정부평가」 3위 (온라인참여지수 1위)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 지능형 정부로의 도약 기반 마련

-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지능형 정부 중장기 로드맵」 마련(11월)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전자정부법」 전면 개정
- AI·IoT 기술의 범정부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장 창출 촉진

- 범정부 첨단기술 활용 선도사업 추진('18년 23개 사업, 704억원)
* (예시) 블록체인 원산지증명, AI기반 국민신문고, 지능형 CCTV관제 등
-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기술혁신을 위한 수·발주 제도 개선(12월)

□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구현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제정('17.12 제출) 및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추진

○ 국민생활 밀접분야(안전·복지 등)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10종 구축('18)

- 구급차 골든타임, CCTV 사각지대 해소 등 3개 모델 전국 확산(~'19)

□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지원

○ 핵심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확대 및 '국가데이터맵' 구축 추진

- * 자율주행차(신호등), 스마트시티(교통분석), 인공지능(의료영상) 등 29개 중점분야

○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창업 지원 및 장소 데이터 기업 육성

- 공공데이터 창업을 쏠 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추진
-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공간(오픈스퀘어·D) 확대 ※ ^{'16}서울→^{'17}부산→^{'18}강원·대전

2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환경 구현

< 주요 성과 >

- √ '연말정산 홈페이지' 플러그인 제거('18.2월), 신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의무화('18.3월)
- √ 공인인증절차 개선 로드맵 마련('18.1월), '디지털 원패스' 9개 사이트 시범운영('18.6월~)

□ 사용하기 편리한 공공 웹사이트 실현

-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공공웹사이트 플러그인(액티브X 등) 제거
 - ※ ('18) 홈택스, 정부24 등 30대 사이트 우선 제거 → (~'20) 모든 사이트 제거 완료
- 플러그인 사용 금지를 위한 관계법령 등 제도 개선*('12월)
 - * 「민원법 시행령」(증명서 출력매수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화면복사 방지) 등 액티브X 사용 요구

□ 공공분야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개선

- 공인인증서 제거 및 대체수단 적용
 - 생체·모바일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선택 기회 제공
 - ※ ('18) 정부24 등 주요 웹사이트 중심 적용 → (~'20) 대체수단 적용 완료
-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원패스*' 구현
 - * ('18) 교통법칙금 납부 등 14개 웹사이트에 적용 → ('19~) 정부24 등으로 확대

□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웹사이트 디자인·이용절차 마련('12월)
 - ※ 사용자 만족도, 정보 신뢰도, 검색어 관리 등 사용성 중심의 관리지표 개발
- PC·모바일, 웹브라우저 종류에 관계없이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 공공 웹사이트의 웹접근성·호환성 수준진단('10월) 실시 및 환류
- 공공 웹사이트 총량관리를 통한 무분별한 웹사이트 남설 방지
 - 유사 웹사이트를 통폐합하고, 웹사이트 신설 시 사전협의 의무화
 - * 공공웹사이트 수(개) : ('15)14,583 → ('16)11,287 → ('17)8,564 → ('18.6월)8,107

3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 강화

< 주요 성과 >

- √ 개인정보 실태점검('18.상반기): 138개소 점검, 125건 행정처분, 26개소 공표
- √ 랜섬웨어 공격, 평창올림픽 등 대비 24시간 사이버안전 상황근무체계 가동(상시)

□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전한 정보환경 구현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

- 'e프라이버시 클린센터의 본인확인내역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기능 강화'
 - * (현행)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 (추가) 신용카드 인증 / (현행) 탈퇴소요기간 최대 90일 → (개선) 60일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시정명령 청구 제도 마련

○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확보 및 피해자 구제 강화

-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재식별 시도 및 결과물 이용 시 과징금 부과·형사처벌 등 제제방안 마련(8월)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활동 강화

- 개인정보 취약 분야 및 대량 보유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 ※ 유통업·대학 등 취약분야 대량보유기관(620개) 직접점검, 8만3천개 기관 자율점검체계 운영
-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대상 확대* (4종 → 8종)
 - * (현행) 주민,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 (추가) 휴대전화, 계좌, 신용카드, 건강보험번호

□ 전자정부 사이버위기 대응역량 강화

○ 해킹·DDoS 등을 자동분석·학습하는 '지능형 사이버보안시스템' 도입

- 중앙부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지자체(지역정보개발원) AI기반 통합관제 강화

○ 공공기관 사이버위협 예방·대응역량 제고

- 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18년 48명), 지자체 사이버보안 역량 컨설팅·교육

〈5〉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 ①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준비태세 확립
- ② 선진적인 재난관리 기반 조성
- ③ 국민이 체감하는 재난관리체계 혁신

1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준비태세 확립

< 주요 성과 >

- √ 포항지진('17.11월), 밀양·제천 화재(~'18.1월) 등 신속한 수습·복구 지원
- √ 재난문자 발송시간 단축('17.11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8.5월 634개 기관)

□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운영

- 폭염(~9.30)·풍수해(~10.15) 대책기간 운영 등 재난유형별 체계적 대응
 - 주요현장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및 단계별 비상근무 등 철저한 상황관리
 - 폭염 예방활동* 강화(그늘막 설치, 취약계층 지원 등),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안내
- 취약지역 사전대비*(9~11월) 및 대책기간 운영(11~3월) 등 겨울철 재난대응 강화
 - * 상황관리체계 구축, 인명보호대책, 제설자재·장비확보, 제설취약구간 등 점검

□ 대규모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 예측이 어려운 사회재난 대비 유형별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제고
 - * 대형화재·가축질병(9월), 해양선박·지하철(10월), 원전사고·산불(11월) 등
- '사회재난 정책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평시 교육·훈련·매뉴얼 정비, 재난 발생시 '중앙수습지원단' 지원

□ 재난상황 정보 공유·전파 체계 개선

-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추진*
 - * 1단계('18) 중부권 5개 시도 → 2단계('19) 남부권 9개 시도 → 3단계('20) 수도권 3개 시도
- 문제해결형 상황관리를 위한 기관 간 재난상황정보 공유 확대
 - ※ (시스템) 화학물질 사고 대응 정보시스템 등 7종 추가 연계(총 33개 기관 57종)
 - (영상회의) 현재 20개(소방·해경·지자체 등) → ⁽¹⁸⁾ 25개(+해수부, 산림청 등) → ⁽²²⁾ 37개 완료
- 국민이 체감하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체계 개선
 - 문자 내용에 국민행동요령 포함(지진·지진해일 既시행), 5G 서비스 대비 등

2

선진적인 재난관리 기반 조성

< 주요 성과 >

- √ 정부합동 「지진방재 개선대책」 수립('18.5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발('18.5월)
- √ 방재·기업재난·지진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9개 대학)

□ 지자체의 인적·재정적 재난관리 역량 강화

- 현장 재난관리의 핵심인력인 방재안전직 확충 및 처우개선*(~12월)
 - * 직렬수당 신설, 지자체의 방재직렬 총원 유인책 마련(평가·재정지원 등), 교육 강화
-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자율성 확대*(7월~)
 - * 민간영역 지원 확대, 기금용도에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도입

□ 신기술·제도 활용, 재난관리 고도화

- 증강현실 기술 활용, 3개 재난유형*의 실전훈련 시뮬레이터 개발(~'19)
 - * 유해화학물질 유출, 다중이용시설 붕괴, 풍수해 및 댐 붕괴 사고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현장체감형 재난 안전 R&D사업 발굴·확산
 - ※ (예시) 몰래카메라 통합 탐지 기술, 재난발생시 대피경로 안내 기술 등
- '재난안전 의무보험(15개 부처, 29개)'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 (법개정) 개별법령별 보상한도 차등 해소, (시스템) 가입자 통합 전산관리 등

□ 정부·민간 공동의 지진방재 기반 확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10월) 등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 * 공공건축물 → 공공건축물 + 민간건축물까지 대상범위 확대
- 전국적 단층조사* 본격 실시 및 단층지도 대국민 공개**
 - * 동남권(~'21), 수도권(~'26), 전국(~'36) 順 ** 활성도가 명확한 단층 우선 공개('19)

3

국민이 체감하는 재난관리체계 혁신

< 주요 성과 >

- √ 읍면동 단위까지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18.5월)
-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제정('18.6월), 「자연재난구호 등에 관한 규정」 개선('18.7월)

□ 중앙-지방 간 재난현장 협력기능 강화

- '중앙수습지원단*' 상설기구화(9월)로 지자체 재난수습 효율적 지원
 - * 포항지진 발생시, 중앙수습지원단이 중심이 되어 중대본-각 부처-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체계적 피해 수습 지원
- '지자체 통합지원본부' 편제·운영 개선*(10월)으로 일사불란한 현장대응 강화
 - * 현장특성을 고려, 상황관리 및 의료·장례지원 등 주요 기능별 협업체계 강화

□ 재난피해 복구 및 구호 지원체계 강화

-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신속한 복구 추진
 - * 주택피해 복구비 인상(전파 9→13백만원), 부상자 지원기준 완화(장해 7→14등급) 등
- 심리 상담에서 치료·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 * (행안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및 시·도별 지원센터 운영 등
 - (복지부) 트라우마센터 등을 활용한 고위험군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

□ 위기경보 체계 및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개선

- 신종재난 등 재난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기경보 체계*' 마련
 - * 획일적인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가축질병 등 재난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위기관리 매뉴얼' 현장적합성 제고 및 엄격한 관리체계 도입
 - 지역특성·재난사례 등 반영, 전자매뉴얼 활용, 합동점검 실시 등

〈6〉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

- ①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 ② 범정부 안전정책 조정·관리기능 고도화
- ③ 선진 안전문화 정착 및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

1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 주요 성과 >

- √ 「보행안전 종합대책」 발표('17.9월),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중점사용 특례규정 연장('17년→'20년)
- √ 국가안전대진단('18.2~4월, 63만명 참여, 34만개소 점검결과 보수보강대상 22,282개소 발굴)

□ 예방 중심의 현장안전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의 내실 있는 이행 및 개선 추진
 - 보수보강 진행 상황 지속 관리, 안전점검 실명제 및 점검결과 공개*
 - *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 추진('18. BPR/ISP, '19 시스템 구축, '20. 대국민 공개)
-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지역별 안전투자 확대
 - 조기집행 강화, 사업대상 추가(가뭄) 및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추진
 - * 시범사업 '19년 예산 편성('18), 통합설계('19), 행안·국토·환경부 공사 추진('20~'22)

□ 지역주민 안심 생활환경 조성

- 보행 및 교통안전 집중 투자로 교통약자 보호
 - 지역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보행안전법」 개정)
 - * 초교 주변 보도·보행로(691곳) 및 CCTV(10,949곳) 설치, 회전교차로 등 교통시설(510곳) 확충
- 승강기·어린이놀이기구 등 생활주변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14종→20종) 및 제조수입업자 사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기구 검사기관 공정성 제고 등 놀이기구 안전 확보

□ 지역 안전수준 제고 지원

- 지자체 안전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역 안전수준 종합 평가」 실시
 - 「지역안전지수*」 산출·공개 및 하위등급 지자체 컨설팅
 - * 7개 분야(화재·교통사고·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자연재해) 상대평가(1~5등급)
-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지자체 소방·안전시설 확충
 - 노후·부족 소방장비·시설 개선, 하천 방재시설 정비 등

2

범정부 안전정책 조정·관리기능 고도화

< 주요 성과 >

- √ 「안전산업 박람회」 개최(17.11월), 재난안전우수제품 인증제 본격 시행(18.2월)
- √ 부처별 안전기준 심의·등록(17.8월~), 부처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수립(18.4월)

□ 안전관리제도의 선제적 정비로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

- 불합리한 안전규제 기준*의 합리적 정비
 - 「안전기준 개선 권고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규제 적합성 점검 추진
 - * (예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완화(09)로 의정부 화재(15.1월) 피해확산에 일부 원인 제공
 - 안전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원인자 책임 강화
- 재해예방 분야 제도 체계적 정비*로 예방효과 극대화
 - * 재해예방사업(100억 이상) 사후평가 실시, 사유 급경사지 국가 지원 강화

□ 안전산업 육성 기반 구축

- 국내 안전산업 우수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진출 지원
 - 우수 제품·기술 보유 기업 지원 강화*, 안전산업 박람회 개최(11월)
 - * 안전기술 상용화 지원,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7년 → 12년) 등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17.9월 발의)을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신기술 지정 확대(자연재난 → 자연+사회재난) 등

□ 재난안전 사업예산의 체계적 관리

- 범정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의 운용 내실화
 - 협의 대상사업 확대('17386개 → '18407개) 및 핵심사업* 중심 투자방향 제시
 -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산재), 화재·지진·가뭄·미세먼지 특별대책 등
- 안전사업 사후평가 강화로 재난안전투자 성과관리 실효성 확보

3

선진 안전문화 정착 및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

< 주요 성과 >

- √ 「제1차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17.12월), 안전교육 전문인력 인증관리('18.6월)
- √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 추진('18.5월~) 및 안전보안관 발대식('18.5월)

□ 안전이 기본인 선진 안전사회 구현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 추진 및 국민 안전의식 함양
 - 국민 참여를 통한 7대 관행 선정, 부처 합동 관행별 근절대책 추진
 -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③ 과속·과적운전 ④ 안전띠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
 - 기관별 추진실적 평가지표 반영, '안전보안관' 양성(3천여명)
 - 안전교육 전문인력(1만명)·기관(100개소) 양성(~'22), '안전체험관' 확충*
 - * (현재) 전국 155개소 → (~'21) 서울 도봉·경남 합천 등 8개소 추가설치
- 안전약자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복지 실현
 - 키즈카페 등 어린이안전 강화, 안전약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 안전취약계층 범위 확대, 교육·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제도화 등

□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민방위 확립

- 포괄적 안보개념을 반영한 비상대비 개념 재정립
 -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협을 비상대비계획(총무계획)에 반영*
 - * 전시 GPS 전파 혼신, IoT 기술을 활용한 국가중요시설 방호, 사이버 테러 대응 등
 - 안보정세를 감안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연습 추진
 - * '19년부터 한국군 단독연습(태극연습)과 연계, 포괄적 안보대비 훈련으로 실시
 -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 관리 및 비축물자 관리역량 강화
 - * 현지조사 확대, 조사결과 D/B화 등 정확한 동원자원 관리 기반 조성
- 국가 비상·재난사태에 대비한 민방위 활동 내실화
 - 전국 단위 민방위훈련 확대(2회→4회)를 통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 * 민방위 화재대피훈련(3월), 지진대피훈련(5월) 既 실시, 하반기 2회 예정(8월, 11월)
 - 민방위 경보단말 확충 및 정비를 통한 경보사각지역 해소

Ⅲ . 당면 현안

- 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 ③ 개인정보 규제 개선
- ④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1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 필요성

- 미이양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법령 제정으로 국가 권한·사무의 적극적 이양,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자체의 수용성·실행력 제고

※ (근거) 「지방분권법」 제11조 :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추진 경과

- '00~'12년까지 국가사무 3,101개 위원회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이양 결정
- 「지방이양일괄법(안)」 마련('14.4월) * '15~'17년 국회 입법 무산
-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여·야 합의('18.5.18.)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5~6월)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의결('18.7.5.)

□ 추진 내용

- 명칭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상법률 및 사무 : 19개 부처 소관 77개 법률, 518개 사무
※ 자치위 전문가 T/F 심사,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양 대상 사무 확정
- 주요내용
 - 지방이양일괄법 대상 사무 이양을 위한 개별법률 조문별 개정사항
 - 이양된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재정 지원 및 법령 정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인력·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 국회 보고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국회제출(~9월)
- 국회 심의를 통해 연내 제정 추진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2018년 추가경정예산사업)

□ 개요

- 청년실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향후 4년간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 (사업규모) '18년 10,552명, '18~'21년간 7만명+α(잠정)
- (예산액) '18년 국비 831억원, 지방비·기업 919억원 (보조율 30~50%)
- (지원내용) 유형별*로 인건비, 교육, 주거·복지** 등 지원
 - * ① 지역정착지원형(2년) : 지역기업(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 일자리 제공
 - ②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년) : 창업공간, 임대료, 교육, 사업화자금 등
 - ③ 민간취업연계형(1년내) : 일 경험 제공 및 민간 취·창업 연계
- ** 주거·복지 등 정주여건 지원(지자체 자체재원)

□ 추진상황

- 청년일자리 및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안* 국회의결(5.12.)
 -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831억원), 희망근로지원(121.5억원), 고흥사랑상품권(60억원)
- 지자체 세부사업 공모(5.21.~30.), 심사* 및 선정(5.31.~6.22.)
 - * 민관합동 TF 주관, 372개 세부사업 선정(17개 시도, 150개 시군구)
- 지자체별 확정내시(6.27.), 先집행* 통보(6.28.) 및 국비교부(6.29.)
 - * '예산 성립 전 집행'을 활용하여 국비교부액 先집행(~9월)
- 중앙·지방 협업 하에 언론홍보(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6월~)

□ 향후계획

- 속도감 있는 사업집행과 현장·지자체와의 소통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 지자체 사업시행(7.2.~), 全 사업(372개) 이행상황 점검*(매주, 7월2주~)
 - * 사업단계별 이행계획·실적 점검(매주), '지역 일자리책임관 회의' 시 보고(매월)
 - 지자체 추경편성 및 신속집행 독려
 - * 시도 부단체장 회의, 신속집행 우수사업 행·재정적 지원 등
- 민관합동 TF의 현장점검, 결과분석 등 사후관리(9월~)

3

개인정보 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범위가 불명확하고, EU나 일본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외로 이용가능한 가명정보* 개념 미도입
*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정부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16.6월)하였으나 법적 근거 논란
※ 시민단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합 기업 등을 고발('17.11월)

□ 추진 경과

- 4차산업위 주관 자유토론('18.2월·4월) 및 국회 4차특위 특별권고('18.5월)
※ ①개인정보·가명정보 개념 명확화 ②가명정보 이용가능 목적은 공익 기록보존, (산업적)통계작성, (산업적)학술연구 ③데이터결합 근거 마련 ④보호위 독립기구 위상강화

□ 규제개선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익명정보 적용 배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가명정보 이용범위 확대) 산업적 연구 목적까지 허용
 -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 민간·공공 데이터 결합 근거 명확화, 결합은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 전문기관에서 수행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재식별금지 의무,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의무 부과 및 고의적 재식별 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처벌 강화
-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
 -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국회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개정 추진

4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 폭염 장기화 및 전국적 확산에 따른 대응 강화

< 7.21.현재 피해현황 > 온열질환 1,043명, 사망 10명, 가축 폐사 125만 마리 등

-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대응 및 지원 강화 ※ 폭염 대책기간(5.20.~9.30.)
 -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대책회의*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 *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5.17.), 지자체 회의(7.11., 7.13.), 관계부처 대책회의(7.19., 7.23.)
 - 폭염 저감시설 확대(특교세 '17년 29억→'18년 40억원), 특교세 추가지원 추진
 -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토록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추진(행안위 계류 중)
- 독거노인 안부 확인, 노숙인·실외작업장 예찰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 무더위쉼터* 지정확대 및 관리강화 * 전국 45,284개(전년 대비 5.5%↑)
 - ※ '무더위쉼터 불편사항 신고제' 운영(~9.30.), 지역자율방재단 합동점검 실시, 폭염 대응 실태·예방활동 등 강화를 위한 '간부공무원 지역 전담제' 운영
- 마을·가두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한 폭염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

□ '6.26.~7.4. 호우' 및 '제7호 태풍' 피해 복구 추진

- 지자체·중앙합동조사단 피해조사(~7.13.)*를 통해 전남 보성군 소재 보성읍·회천면 최초 읍·면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7.18.)
 - * (피해조사 결과) 전남 보성군 28억원 피해 발생(주택 16동, 농경지 35ha, 산사태 6건 등)
- 복구계획 중대본 심의·확정 및 복구사업 추진(7월말)

□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 재해취약지역(3,364개소) 전수조사 및 사전정비 실시(사도 교차점검, 4.16.~30.)
- 24시간 상황근무 등 선제적 상황관리 및 바로톡 등 전파체계 다양화
 - 하천 둔치 주차장 차량침수 예방을 위해 등급화(1~3등급) 및 집중 관리
 - 대규모 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정선 가리왕산 등) 특별관리

IV . 2018년 하반기 정부입법계획

2018년 하반기 정부입법계획

* '18. 7. 1. 기준

연번	법안명	주요내용	국회제출 일정
1	제주 특별자치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제 합리화(인·허가 간주제 도입) * 휴양펜션업의 양수 신고,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 신고 및 차고지변경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시 	7월
2	소규모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공공시설 재난관리 업무를 '방재관리 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중기·실시계획의 수립 	7월
3	지방자치법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시 사무배분 사전 협의 제도화 	8월
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지·댐의 재난관리업무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저수지·댐관리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경우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 	8월
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경사지 재난관리 업무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중기·실시계획의 수립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설립 	8월
6	지방자치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조례 개폐청구제도 개선 	9월
7	지방공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경영 공시의무 위반, 경영평가 실적 허위 제출 및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9월
8	주민등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 	10월
9	지방세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시 납세자보호제도 마련 · 6개월 이상 해외 거주 체납자의 소멸시효(5년) 정지 사유 추가,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 확대 (5년→7년) 등 	10월
10	지방세징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 제외대상 추가 ·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10일→20일) 	10월

연번	법안명	주요내용	국회제출 일정
11	지방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제도 합리성·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대책 지원을 위한 가정어린이집 등 주택유상 거래 특례세율 적용 등 ·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비과세 대상 명확화 등 	10월
12	지방세특례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일몰예정 감면에 대한 감면정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저출산 극복, 서민지원을 위한 감면 (축소·종료) 감면목적 달성, 담세력이 높은 대상 등 · 세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감면제도 개선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10월
1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유인 설계 · 기타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10월
14	소하천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하천의 재난관리업무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하천정비법에 규정된 소하천정비종합·중기·실시계획의 수립 · 소하천 점용범위, 유형 및 허가조건 등을 행안부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 	10월
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전대진단 근거 마련 및 안전점검 결과 공개 · 정부합동 안전점검 대상을 민간시설까지 확대 · 사고수습지원본부 구성·운영 및 재난 현장 수습지원단 체계적 운영 	10월
1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신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사업) 5톤, 정원 13인, 영업구역 2해리(3.7km) 이상, (신고사업) 면허사업 대상 외 · 승객안전 안내방법 개선 및 구명조기 착용대상 확대 · 도선 내 차량적재 시 안전기준 신설 	10월
17	자연재해대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장관이 10년마다 국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0월
18	지방회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출관'을 '통합자금운용관'으로 명칭 변경 · 지자체 결산서 첨부서류 정비 등 	11월

연번	법안명	주요내용	국회제출 일정
19	주민투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검토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공정성 강화 등 주민투표 청구절차 개선 추진 	12월
20	주민소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소환 청구요건 개선 · 주민소환 개표요건 개선 	12월
21	지방공무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가능성 명시 · 소청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 시 의결정족수 기준 강화 ·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 	12월
22	옥외광고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임의화 	12월
23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 주소기반 4차산업 창출 지원근거 마련 ·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체계 구축 등 	12월
24	재해구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연금 배분위원회 참여자 확대 및 심의사항 추가 · 행안부장관의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신설 · 의연금 회계규정 명시 * 의연금 회계 분리, 의연금 잔액 이월 등 	12월
2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 전자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 기록관리 체계개편 및 자율성 강화 · 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 	12월
2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제도 개선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 도입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상 강화 	12월

참고

국회계류 중인 중점법안 (18건)

연번	법안명	주요내용	비고
1	법령공포법 (‘17.10.26. 정부)	○ 전자관보와 종이관보 대등 운영, 동일한 효력 부여	
2	행정사무 민간위탁법 (‘17.4.13. 정부) ※ 제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행안부), 운영위원회(부처) 설치, 독점위탁 금지 등	
3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법 (‘17.12.28. 정부) ※ 제정	○ 심의위원회 설치 및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절차 등	
4	정보공개법 (‘17.12.28. 정부)	○ 정보공개위원회 위상 강화(행안부장관→총리) ○ 기관별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관리강화 ○ 고의지연 금지 등 정보공개담당자 의무 신설	
5	전자정부법 (‘17.12.27. 박남춘)	○ 전자정부 성과관리 통합추진 등	
6	개인정보 보호법 (‘18.3.5. 진선미 등)	○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이용범위 확대 및 데이터 결합 근거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7	개인영상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12.22. 정부) ※ 제정	○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 및 기준 마련 ○ 열람·삭제 청구권 등 영상정보주체 권리 강화	
8	고향사랑 기부금법 (‘17.9.27. 이개호) ※ 제정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 개인이 고향 지자체(現 거주지 제외)에 일정액을 기부 시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등 *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9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17.2.24. 진선미) (‘16.6.18. 유민봉) ※ 제정	○ 정책위원회(행안부 장관 소속) 설치 ○ 국가·지자체의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 ○ 한국마을공동체진흥원(한국지역진흥재단 확대·개편) 등 중간지원기관 설치	

연번	법안명	주요내용	비고
10	과거사정리 기본법 (17.2.23. 진선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재개 * 신청기간(2년), 조사기간(4년+2년) ○ 과거사통합재단 설립 및 배·보상 강구의무 	
11	제주4.3사건 특별법 (17.2.23. 오영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 등 ○ 트라우마 센터 설치·운영 	
12	공중화장실법 (17.2.23. 진선미) (17.9.26. 박성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금지 및 벌칙 	
13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16.10.20. 이명수) ※ 전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 자원봉사센터의 민간화, 재능기부·온라인 봉사의 자원봉사 개념 포함 	
14	지방공기업법 (17.12.28.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사업범위를 부동산 자산관리사업까지 확대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사유 신설 ○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활동 원칙 신설 	
15	보행안전 편의증진법 (17.12.29. 소병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1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17.9.4. 이재정) ※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안전산업 육성기반 마련 ○ 방재안전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17	재해구호법 (17.12.25.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행안부)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시·도)’ 운영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7.12.29.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본 요건(적정한 보상한도액 등) 제시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등 총괄관리 ○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